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 요청

1.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해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약류 진통제를 적절히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26.3.5. 개정)

 * 동 사항을 반영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현재 행정예고 중임(~4.27.까지)

3. 이와 관련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을 위해 의료기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귀 협회에 협조를 요청드리니 회원 및 비회원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의 통증완화를 위해 환자 상태와 의료진 판단에 따라 마약류 진통제를 적절히 투여할 수 있는 대상은 **CRPS 확정 진단을 받은 자**에 한합니다.

◈ **CRPS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환자**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 Ⅱ.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을 적용합니다.

◈ 참고로 우리 처는 CRPS 확정 진단을 받고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산정특례, 산재보험 등 등록정보를 받아 확진 여부를 이중 확인**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CRPS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환자에게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하는 경우** 처방프로그램 내 **질병코드에**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을 의미하는 **R/O(Rule Out)을 함께 기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진통제 투약·조제보고 시 질병코드에 입력된 R/O 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함께 보고되며, 우리 처는 질병코드에 R/O가 병기된 CRPS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환자에게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사례는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우리 처는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사례 등 처방현황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아래 경우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 적정 등에 대해 확인 요청하거나 사전알리미가 발송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CRPS 의심 또는 임상적 추정 환자

② CRPS Ⅰ형, Ⅱ형 확진자(질병분류기호 G90.5, G90.6) 중 산정특례 등 미등록자

③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CRPS 확진자(질병분류기호 G90.7*)

* G90.7은 산정특례 등록대상 아님

4. 마약류 진통제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환자의 안전사용 교육강화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한국병원약사회와 공동으로 교육자료(붙임)를 제작하여 보내드리니 회원 및 비회원에게 널리 알려주시어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받는 환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환자 대상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교육자료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한국병원약사회

주무관 남혜연 약무사무관 김지선 마약관리과장 전결 2026. 4. 16. 김은주

협조자

시행 마약관리과-2398 (2026. 4. 16.)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 mfds.go.kr

전화번호 043-719-2899 팩스번호 043-719-2890 / hyanm@korea.kr / 비공개(5)